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3장 이용계약

제1조 (계약목적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2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3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4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
제4장 이용료

제1조 (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제2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 4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5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-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- ③ 등급변경시 재계약을 한다.

제3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해당월의 익월 20일전까지 고지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를 해당월의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문자나, 카톡, 전자메일, 우편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(2025. 01. 01.)기준

※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95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

[표1]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(치매특별등급)
월 한도액(원)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[표2] 방요양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류번호	구 분	금액(원)	분류번호	구 분	금액(원)
가 - 1	30분 이상	16,940	가 - 5	150분 이상	49,160
가 - 2	60분 이상	24,580	가 - 6	180분 이상	55,350
가 - 3	90분 이상	33,120	가 - 7	210분 이상	61,670
가 - 4	120분 이상	42,160	가 - 8	240분 이상	68,030

[표3] 방문목욕서비스 1회당 급여비용 산정기준

방문목욕	분류	금액(원)
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60분이상)	48,690

[표4]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수급자	15% 부담
보험료 감경대상자 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	9.0% 부담
차상위,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25%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.0% 부담
기초수급자	0% 부담